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와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4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5 참조](#))

1. 구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인정 여부

2.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3.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특성 분석 및 합리적 평가방안 제언

- 품목분류 부문(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 별첨 5 참조)

1. 스마트 모니터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2. 제2103호 "소스와 혼합조미료"의 범위에 관한 연구
3. 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특히, 사학(history)에 관한 것]"의 분류 기준 연구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논문형식 및 분량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별첨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및 별첨 7)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논문 후단에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가 신청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6.4.14.(화) - 5.29.(금)

※ 참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김현영 주무관

☎ 042-714-7511 / hy0103@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정의석 주무관

☎ 042-714-7531 / jes118@korea.kr

6 논문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수)**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검증 및 심사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

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8 시상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 발표 : **2026.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제출된 연구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 연락처	010-1234-5673	■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 논문주제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팀원

■ 성명①	김길동	■ 소속	관세컨설팅(주)	■ 직위	컨설팅본부장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②	박길동	■ 소속	관세법인 대전	■ 직위	관세사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6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별첨 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6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6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관세평가 부문]

주제 1	구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인정 여부
<p>【연구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거래당사자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와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로서 일국에 소재하는 자와 타국에 소재하는 자 간 일대일 (man to man)의 물품가격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운송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 무역 리스크 분산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당사자 간 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현재 관세평가 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제3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소프트웨어의 생산지원,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제거래, 본사의 이익 조정을 위한 여러 해외 관계사로부터의 사후보상조정 등 하나의 수입물품에 여러 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그에 따라 여러 거래에서 여러 거래 당사자가 존재함에 따라 누구 또는 어느 계약내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세평가 상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한편, 본 연구주제는 2020년 Covid - 19 Pandemic 당시 발생했던 반도체 대란과 관련하여 국내 완성품 생산자가 반도체가 포함된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인 국내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확보를 위해 해외 판매자(생산자)에게 프리미엄(소위 ‘웃돈’)을 지급한 사례를 통해 착안한 주제로서 하나의 물품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는 거래형태로 이러한 거래형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수입물품의 관세목적(Customs Purpose) 상 과세가격(Customs Value) 결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협정 부속서 I,III 주해 및 관세법 제30조) 인 바, 구매자를 대신(혹은 별개로) 제3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우선구매를 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 ① 해당 대가가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인지 아니면 우선 구매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지급인지와 ② 그러한 대가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해당 대가 없이도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③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관세평가 상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연구방향】

-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상 실제지급가격 개념의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 단,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배당 또는 기타지급 제외”라는 명제가 상호 어떻게 호환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지에 대한 연구
- 협정 및 관세법 상 규정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제3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량보증비용의 성격 검토
 - 물량보증비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인지 아니면 우선 구매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지급인지와 우선 구매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지급의 경우라고 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구매자와 판매자간 상호 합의하는 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정해져 있는지)
- 물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자를 대신해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국제거래 유형에 대한 유형(사례) 리서치 및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고찰

주제 2

매출액의 일정 율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연구배경】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더한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규정함
 - 동 조항 제4호에 따라 권리사용료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동조 제2항·제5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한편, 법 제30조제1항제5호는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 제19조의2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는 가산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가산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
- 최근 다국적기업의 상업 관행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해당 지급금이 위 조항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쟁이 증가하고 있음

【연구방향】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한 금액을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할 때 두 조항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 권리사용료로 가산할 수 없는 비용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이를 실질과세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 법에서 규정한 가산요소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도출

○ 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수입물품의 가치를 반영한 과세가격 도출을 위한 법리적 판단 기준 연구

주제 3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특성 분석 및 합리적 평가방안 제언

【연구배경】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 구조에 반영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IT 산업에서는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특정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전통적인 물품대금과 달리 계약 구조 상 별도로 지급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임무수행단계별로 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평가 상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한편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일반적 연구비용, 특정물품 개발비용, 기술사용 대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산업별로 그 형태와 구조가 상이함. 가령 반도체 산업에서는 설계비 및 공정개발비가 핵심을 이루는 반면에 제약 산업에서는 임상시험비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산업별 연구개발 구조를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관세평가 상 적정한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

- 산업군별(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IT 산업, 방위산업 등)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특징(물품 기준)과 개발결과물의 형태 및 해당 결과물의 산업군별 상업화 적용사례
- 연구개발계약의 산업군별 유형과 프로세스를 구분하고 해당 개발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관세평가 상 실제지급가격 혹은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등)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 연구개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사항 유형화(수입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 해외 주요국 사례(미국, EU,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자료수집

[품목분류 부문]

주제 1	스마트 모니터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p>【연구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PC 모니터의 범주에서 벗어난 ‘스마트 모니터’가 출시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PC 모니터에 스마트 TV OS를 탑재하여 PC 연결 없이 OTT 시청, 웹 서핑, 문서 작업, 화상 회의를 수행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에 해당함○ 현행 HS 체계에서 ‘스마트 모니터’와 같은 신유형 디스플레이 장치의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8528호 해설의 내용은 초기 PC 중심 환경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의 스마트 모니터와 같이 자체 운영체제, 네트워크 기능 및 독립적 콘텐츠 재생 기능을 갖춘 장치의 기술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제8471호 규정에서도 자체 운영체제, 네트워크 기능 및 독립적 콘텐츠 재생 기능을 갖춘 스마트 모니터와 같은 융합형 장치의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내장 부품은 동일하지만 기능 등에 따라(OS 체제 또는 주된 기능은 아니나 부수적인 기능 등이 추가) HS 2, 4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되는 신제품의 기능 발전 속도를 HS 체계 및 관세율표가 따라가지 못하여 분류 해석 및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생○ 제8528호와 제8471호가 경합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분류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호 해설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

- ‘스마트 모니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의
- 제8471호에 스마트 모니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 융합형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우선 순위 연구

주제 2

제2103호 “소스와 혼합조미료” 의 범위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 (배경) 관세율표 제2103호에 분류되는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육, 어류, 채소, 과일, 향신료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단독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요리의 조리 중 첨가하거나 곁들여 사용하는 조제품임
- (문제점) 다른 음식의 조리에서 사용되는 육·어류의 조제품(제16류)과 채소·과일의 조제품(제20류)은 재료적인 면에서 제2103호 물품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 용도적인 면에서 “스프레드(spread), 페스토(Pesto) 등”은 식문화의 발달로 단독으로 섭취하기도 하고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하여 제16류, 제20류와 제2103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음
 - 또한, 혼합조미료는 요리에 향미를 부여하는 조제품으로 제2106호의 향미용 조제품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

토마토 케첩(토마토 퓨레·설탕·식초·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셀러리염(조리용 식염과 미세하게 같은 셀러리(celery) 종자의 혼합물)·소시지 제조용 혼합조미료

제2106호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연구방향】

- 제16류 및 제20류와 제2103호(소스와 혼합조미료)를 구분을 위한 구체적 사례 중심의 명확한 논리 연구
- 제2106호(향미용 조제품)와 제2103호(혼합조미료)를 구분할 수 있는 논리 연구
- 새로운 식문화에 따라 쟁점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한 연구

주제 3

**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특히, 사학(history)에 관한 것]”의
분류 기준 연구**

【연구배경】

- 관세율표 제9705호는 사학·고고학·민족학 등에 관한 수집품 및 표본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학적 물품에 관해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국가적·전지구적 **중요 사건**과 관련된 물품” 또는 “**유명 인물**과 관련된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는 2022년 이전 HS 해설서에 비해 개념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무 적용상 다음과 같은 해석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함
 - (사학 개념의 추상성) **중요 사건**, **유명 인물** 등 판단 기준의 정량화 불가하며, 국가별, 시대별 평가 차이에 따라 분류 결과 상이 가능
 - (수집품 판단 기준 부재) 동일 물품이라도 일반 소비재인지, 역사적 수집품인지 구별 기준 불명확
 - (현존 인물 관련 물품의 분류 문제)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BTS의 개인 소장품 등) 현존 인물도 “historical interest”에 포함되는지 여부, 팬덤·상업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의 구별 곤란 ⇨ 현행 해설서는 “사학적 가치”와 “문화적 인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방향】

- “사학에 관한” 판단 요소의 구조화 방안 연구 : 사건 관련성, 인물의 역사성, 시간적 거리 등 “사학에 관한” 판단 요소 구조화·체계화
- “수집품”의 기능적 개념 도입 : 수집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현존 인물” 관련 물품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역사성”을 인정 또는 불인정할 것인지 연구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I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은 꺾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별첨 7]

논문 작성 예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Treatment of
Compensating Adjustments i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연구자 >

이시영(李時榮, Siyeong Lee)

삼일회계법인, 관세사

※ 해당 예시는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논문을 일부 발췌함

목 차

I. 서론	4
1. 연구 배경 및 목적	4
2. 연구 방법	5
II.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7
1. 사후보상조정의 개념	7
2. 대응조정과의 차이	8
3. TP 사후보상조정의 처리방안 문제	10
1) 세제 간 마찰	10
2) 판단 기준 마련 필요성	10
III. WCO 가이드 및 관세법 분석	13
1. WCO 가이드 주요내용	13
2.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법 규정	15
3. 실무적 한계	16
IV. TP 사후보상조정 관련 국내 사례 분석	20
1. 심판례 분석	20
2. 법원 판례 분석	22
1) TP 사후보상조정 영수	22
2) TP 사후보상조정 지급	24
3. 관세청 처리 지침 분석	28
4. 시사점	29
V. 해외 주요 사례 분석	31
1. 미국	31
2. 유럽	33
3. 캐나다	34
4. 일본	35
5. 호주	36
VI. 개선방안	39
1. 제도적 한계 인식	39
2. 처리방안의 법제화 제언	39
VII. 결론	45
참고문헌	46
논문요약(※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제출)	49
부록 : LLMs A.I. 활용 내역	49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이에 따른 관세평가 문제는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화를 통해 가속화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를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전가격 제도를 활용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 내의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가격을 말하며, 이는 각국의 과세당국이 적절한 과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소득과 비용의 국제적 배분을 통한 세후 소득의 극대화(maximization for income after tax)라는 그룹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그들의 '이전가격'은 각국의 내국세 당국뿐만 아니라 관세 당국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종종 시장 상황이나 기업 전략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으로 나타나며, 이는 초기 거래 이후 발생한 재무적 변동에 따라 거래 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후보상조정은 국제 거래의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특히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중략>

1.2. 연구 방법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세무 당국과 관세 당국으로부터 상이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세제 간의 마찰은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사후보상조정을 각 세제상 관점에서 어떠한 성격인지 정의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세무 및 관세 당국 간의 협력 부족과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승열 외(2015)는 관세청 민원회신 및 심판례 등 과세당국의 입장을 분석하며 실제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후귀속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상태 외(2016)는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련 가격조정약관과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사후보상조정 처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관세 당국 측면에서는 상향 조정의 경우 가격조정약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의 과세를 검토하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실제지급금액과 단순 손익조정 금액은 구분하도록 하고, 하향 조정 시에는 가격조정약관 충족 시에 한해 환급을 하도록 하며,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는 수입 전 이전가격 정책을 명문화

하고 사후보상조정 금액에 대한 상세 근거 등을 구비하고 상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민규 외(2018)는 사후보상조정 금액은 국내 영업활동 이후 조정된다는 점을 들어 실제지급가격의 시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사후귀속이익과는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하며 상향 조정의 경우 자료 검토 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다면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하고 자료가 부재한 경우 제1방법을 배제하고 하향 조정의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창민(2024)은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우리나라 처리방안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당 조정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하며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시각을 설명하며 개선방안으로 사후보상조정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고 가격조정약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실제지급금액인지 또는 사후귀속이익인지에 대한 분석 대신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개념과 대응조정과의 차이 그리고 WCO 가이드와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의 분석을 통해 그 실무적 한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심판례, 판례 및 관세청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각각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략>

2.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2.1. 사후보상조정의 개념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¹⁾을 말하며, 이전가격세제는 소득과세 목적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 사이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²⁾. 즉,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되어 국제거래상 조세 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6호.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의 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와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2) 박설아, 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에 기초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이전가격이 위치하도록 설정하게 된다. 정상가격은 다시 특수관계거래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과 각 특수관계거래 참여 법인의 경제적 특성, 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장단점, 이전가격 분석 시 확보 가능한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관련 가격 및 이익률 자료의 확보 수준,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 간 거래 사이에 비교 가능성 차이 존재 시 합리적 차이 조정 가능 여부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다.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다시 해당 범위 내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중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하 “TP 사후보상조정”)이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목표이익률을 사전에 약정한 후 사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제 달성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는 경우 약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조정을 실시하게 되며, 목표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에 조정금액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조정금액을 영수하게 되는데 이를 TP 사후보상조정이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사업연도 동안 전체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된 이익률 범위를 비교하여 전체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다³⁾.

2.2. 대응조정과의 차이

TP 사후보상조정은 내국세 목적의 대응조정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대응조정이란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과세조정(일차조정)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 등을 거쳐 상대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⁴⁾. 즉,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거래가격을 재조정(주로 증액)하는데 이를 일차조정이라 하며, 일차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이동이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차조정⁵⁾을 수행하게 되고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평한

3) 박설아, 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4)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4.32.

A corresponding adjustment ... can mitigate or eliminate double taxation in cases where one tax administration increases a company's taxable profits (i.e. makes a primary adjustmen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in such a case is a downward adjustment ... so that the allocation of profits between the two jurisdictions is consistent with the primary adjustment and no double taxation occurs.

과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를 반영하여 조정(주로 감액)하는 것이 대응조정으로 보상조정과 그 효과는 동일하나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상가격 범위 내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사후보상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략>

7. 결론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정이 관세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수입 이후 시장 상황이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보상조정의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는 내국세 관점과 달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 관세평가와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명확한 처리방안이 부재하고 심판례 및 판례 등에서도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평가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이를 위해 WCO 가이드와 국내 관세법 분석 및 국내 심판례 등 사례와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 국제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TP 사후보상조정의 실질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을 바라보는 시각 변경과 현행 특수관계자 간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ACVA 및 APA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확대 및 확정신고 시 요건 구비 규정을 제시하여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조세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이차조정인 경우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가도 존재함.

참고문헌

1. 한국 문헌

관세청. 2020. 「신청인용 ACVA 가이드」

관세청. 2024. 「2023 ACVA 연차보고서」

국세청. 2023. 「2022 APA 연차보고서」

국세청.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세금·법률가이드」

김영순. 2014.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소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관점에서-”. 법학논총, 31(1), 545-567.

김영순. 2015.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시 이전가격을 이용한 관세회피 사례분석 및 입증 책임에 있어서 시사점”. 서울법학, 23(1), 385-417.

노영훈. 2003. 「한국조세연구원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판례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문상태. (2008).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의 이전가격세제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9(3), 173-195.

문상태·변문태·정진용. 2016. 이전가격조정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2), 23-48

양승종. 2013. “201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29(2), 1-43.

이승열·안정우·김진우. 2015. “다국적 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45-74

이창민. 2024.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결정 시 ‘수입 以後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1)”. 주간 관세무역정보, 2068,20-37.

이창민. 2024.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 결정 시 ‘수입 以後 가격의 변경’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2)”. 주간 관세무역정보, 2069,29-44.

이창민. 2024.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검토(1)”. 주간 관세무역정보, 2074,16-34.

이창민. 2024.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검토(2)”. 주간 관세무역정보, 2075,16-32.

이창희. 2019.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조세학술논집, 35(3), 37-89.

박설아·박훈. 2016.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271-299.

정민규·정재완. 2018. “거래순이익올법(TNMM)에 의한 국제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과세에 대한 고찰“. 관세학회지, 19(4), 71-92.

정재호·구자은·유현영. 2011. “주요국의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최천식. 2018.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전략에 대응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한국관세사회. 2016. 「계간 관세사 통권 제181호 2016 여름호」

함호진·전태영. 2017.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판례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6(1), 65-95.

2. 외국 문헌

Australian Border Force. 2023.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3/41」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2012. 「Practice Statement B_IND08」

Baker McKenzie. 2022. “Germany:

The Hamamatsu TP/customs valuation case comes to a surprising conclusion”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germany-the-hamamatsu-tpcustoms-valuation-case-comes-to-a-surprising-conclusion> (검색일: 2024. 05. 30)

Japan Customs. 「関税定率法基本通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0. 「Reconciliation External Guidanc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0. 「Business Rules and Process Document」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요약)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이에 따른 관세평가 문제는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를 운영하며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이전가격 제도를 활용하며 시장 상황이나 기업 전략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조정은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으로 나타난다. 사후보상조정은 초기 거래 이후 거래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관세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TP 사후보상조정의 주요한 문제는 내국세와 관세 목적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국세 목적과 관세 목적의 TP 사후보상조정은 모두 정상거래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할 목적이지만 1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소득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세제와 달리 개별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P 사후보상조정의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별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결국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법령과 실무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TP 사후보상조정의 명확하고 조화로운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5년 WCO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반된 과세관행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WCO 가이드」를 발간하면서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일관된 접근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s)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2017년 해당 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요건이 ACVA 1방법 인정 또는 APA 사전 승인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처리 기간 또한 다소 길다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은 심판례 및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일관되지 않고 실제지급금액, 사후귀속이익 또는 소득의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심판례에서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소득의 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관세청 처리지침 또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P 사후보상조정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해 수입 전 이전가격 결정 정책이 존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이든 영수든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정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TP 사후보상조정은 소득의 조정을 목표로 가격의 조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OECD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조정은 물품에 대해 지급 또는 영수한 가격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현재 ACVA에 따른 1방법 결정 또는 APA 사전 승인 및 기타 요건들과 별개로 판매계약 등을 통해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확정신고 시 조정 금액의 지급 또는 영수에 따라 과세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되, 지급의 경우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영수의 경우 조세 회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환급을 운영하여 환급 신청 시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 정책, 이전가격 연구자료, 조정 및 계산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서는 지급 시 기간이자 및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수의 경우 확정신고 시 환급 요건과 동일하게 하되, 환급가산금만큼 공제하여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P 사후보상조정의 실질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후보상조정을 바라보는 시각 변경과 현행 특수관계자 간 TP 사후보상조정에 대해 ACVA 및 APA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확대 및 확정신고 시 요건 구비 규정을 제시하여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조세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